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 위생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35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5. 28.
- 라. 회부일자 : 2024. 5. 28.

2. 제안이유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7조)
- 다.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지원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제16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 안 제4조에서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가 구청장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
 -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원신청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라고 지원결정에 대해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지원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 안 제8조에서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하고 규정함.
- 참고로 서울시 9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 안 제8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¹⁾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가 대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중에 공중위생업 관련자는 위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심의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16.10.14.>
 1.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식품위생법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30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명을 초과하면 20명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 날 또는 제5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에 성립된다. <개정 2018. 12. 11.>

⑦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2호, 2024. 3. 29., 일부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2021. 12. 30., 2022. 6. 7., 2023. 7. 25.>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삭제 <2016. 1. 22.>
-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뚜껑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2019. 12. 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營業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營業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營業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營業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 피부관리 · 제모(除毛) ·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 · 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 · 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2015. 12. 22.>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9. 12. 3.>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